



제438회국회(임시회)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

2025회계연도 10·29이태원참사
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
특별조사위원회 소관
세입·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검 토 보 고

일	반	회	계
예	비	비	지
출	승	인	의
건			

2026. 8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김 세 현

목 차

I. 개 황	1
II. 세입세출 결산 개요	1
1. 일반회계	1
가. 세 입	1
나. 세 출	1
(1) 총 괄	1
(2) 전 용	2
(3) 이 월	2
(4) 불 용	3
2. 예비비 지출	4
3. 재무결산	5
가. 재정상태 분석	5
나. 재정운영 분석	6
다. 순자산변동 분석	7
III. 검토의견	8
1. 총괄 검토	8
가. 개요	8
나.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	9

2. 이태원참사 진상규명(1131-310) 및 안전사회 구현(1131-320)	13
가. 개요	13
나. 예비비 이월 사용에 대한 주의 및 연구용역사업의 집행 가능성 확보 필요 ...	14

I. 개 황

2025회계연도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(이하 ‘특별조사위원회’) 소관 세입·세출결산 회계는 1개의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.

II. 세입세출 결산개요

1. 일반회계

가. 세 입

202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은 없음.

나. 세 출

(1) 총 괄

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124억원으로, 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2024년 9월 13일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세출예산액 전액을 예비비로 배정받음(2025.1.14.)

이 가운데 예산현액 대비 70%인 86억 7,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, 1억 1,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, 불용액은 36억 1,200만원임.

*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, 2024. 5. 21일 공포시행

[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예비비	이·전용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다 음 연 도 이월액	불용액 (C)	집행률 B/A (%)	불용률 C/A (%)
본예산	추경									
-	-	-	12,400	-	12,400	8,676	112	3,612	70.0	29.1

※ 수치는 단수조정에 따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(2) 전 용

2025년 회계연도에는 이·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.

(3) 이 월

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,200만원으로, 사업비 내 연구용역 계약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월함.

[2025년 이월 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명 (사업코드)	목-세목 코드	예산현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
이태원참사 진상규명 (1131-310)	일반연구비 (260-01)	200	66	77	57
안전사회 구현 (1131-320)	일반연구비 (260-01)	200	141	35	25

(4) 불 용

불용액은 예산현액 124억원의 29.1%인 36억 1,200만원으로, 이는 진상 규명 조사개시('25. 6. 17. 결정) 지연에 따른 관련 사업예산 상반기 집행률 저조 및 채용 일정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미집행 등에 기인함.

[2025년 주요 불용 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세부사업	내 역	금 액
불용 내역	이태원참사 진상규명 (1131-310)	• 이태원참사 조사개시 결정('25.6.) 이후 관련 예산이 실효행됨에 따른 불용	765
	안전사회 구현 (1131-320)	• 조사개시 결정('25.6) 이후 관련 예산 실효행됨에 따른 불용, 대부분의 출장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여비 등 불용	54
	기록관리 (1131-340)	• 일용직 채용 일정(12개월→3개월)이 지연됨에 따른 불용 • 실제 수집되는 자료기록이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, 종이기록 수량이 미미하여 DB 장비의 임차 또는 구매 비용 미집행	182
	인건비 (7001-110)	• 대규모 채용을 한꺼번에 진행하여, 별정직 채용이 지연됨에 따른 불용	1,460
	기관운영(총액) (7002-200)	• 기간제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 지연에 따라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	524

2. 예비비 지출

2025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예비비 사용 내역은 세출예산 사용 내역과 동일함.

[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사용승인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 월 액	불용액
이태원참사 진상규명	1,161	319	77	765
안전사회 구현	286	197	35	54
대외협력	479	451	-	28
기록관리	239	57	-	182
인건비	4,183	2,723	-	1,460
기관운영(총액)	1,240	716	-	524
기관운영	4,812	4,212	-	600
합 계	12,400	8,676	112	3,612

3. 재무결산

특별조사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.

가. 재정상태 분석

2025년말 기준 특별조사위원회 자산총액은 16억 3,100만원이고, 부채총액은 1억 1,100만원으로, 순자산 총액은 15억 2,100만원임.

[2025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]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5 (A)	2024 (B)	증 감	
			금액 (A-B)	비율 (A-B)/B
I. 자산(a)	1,631	220	1,411	641.4 %
· 금융자산	1,005	-	1,005	순증
· 유·무형자산	504	216	288	133.3 %
· 기타자산	122	4	118	2,950.0 %
II. 부채(b)	111	103	8	7.8 %
· 차입부채	3	3	-	-
· 충당부채	107	101	6	5.9 %
· 기타부채	-	-	-	-
순자산(a-b)	1,521	116	1,405	1,211.2 %

나. 재정운영 분석

2025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 순원가 9억 2,600만원, 관리운영비 64억 2,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73억 5,400만원임.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대비 2억 3,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일반수용비 증가에 기인함. 또한, 관리운영비는 전년대비 64억 2,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가 32억 2,300만원 증가하고 기타경비가 32억 500만원 증가함에 기인함.

[2025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]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5 (A)	2024 (B)	증 감	
			금액 (A-B)	비율 (A-B)/B
I. 프로그램순원가	926	687	239	34.8 %
II. 관리운영비	6,428	-	6,428	-
III. 비배분비용	-	-	-	-
IV. 비배분수익	-	-	-	-
V. 재정운영순원가 (I + II + III - IV)	7,354	687	6,667	970.5 %
VI. 비교환수익 등	-	-	-	-
VII. 재정운영결과(V - VI)	7,354	687	6,667	970.5 %

다. 순자산변동 분석

특별조사위원회 순자산은 2025년 말 기준 15억 2,100만원으로, 기초 순자산 1억 1,600만원, 재정운영 결과 73억 5,400만원,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7억 5,800만원을 반영한 것임.

구체적으로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액 86억 7,600만원, 기타이전수익 8,200만원으로 구성됨.

[2025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]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5 (A)	2024 (B)	증 감	
			금액 (A-B)	비율 (A-B)/B
I. 기초순자산	116	-	116	-
II. 재정운영결과	7,354	687	6,667	970.5 %
III. 재원의 조달 및 이전	8,758	803	7,955	990.7 %
IV. 조정항목	-	-	-	-
V. 기말순자산 (I - II + III + IV)	1,521	116	1,405	1,211.2 %

Ⅲ. 검토의견

1. 총괄 검토

가. 개요

-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예산 124억원을 전액 예비비로 배정 (2025.1.14.) 받아 총 7개의 세부사업에 편성하였고, 예산현액 124억원 중 약 70%인 86억 7,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,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, 36억 1,200만원을 불용하였음.

[202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세 부 사 업 명	2025년									2026년
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예비비	이.전용 등	예산 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	예산액
	본예산	추경								
합계	-	-	-	12,400	-	12,400	8,676	112	3,612	13,303
이태원참사 진상규명	-	-	-	1,161	-	1,161	319	77	765	1,853
안전사회 구현	-	-	-	286	-	286	197	35	54	293
대외협력	-	-	-	479	-	479	451	-	28	464
기록관리	-	-	-	239	-	239	57	-	182	250
인건비	-	-	-	4,183	-	4,183	2,723	-	1,460	4,707
기관운영(총액)	-	-	-	1,240	-	1,240	716	-	524	1,421
기관운영	-	-	-	4,812	±217	4,812	4,212	-	600	4,315

나.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

-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한 2024년 9월 당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고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이 2025년 1월에 제정·시행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.

[2025년까지 특별조사위원회 주요 연혁]

일 자	내 용
'24.5.21.	「10.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(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)」 공포·시행
'24.9.13.	10.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
'25.1.14.	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포·시행 및 예비비 배정
'25.5.20.	조사 개시 사전준비 심의·의결
'25.5.24.	사무처장, 진상규명조사국장, 안전사회국장 임용
'25.6.17.	첫 조사개시 결정(특별조사위원회 의결)
'25.12.23.	조사기간 3개월 연장 결정(특별조사위원회 의결)

(자료 : 특별조사위원회)

- 그런데, 2025년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세부사업·내역 사업별로 살펴보면, 집행률이 70%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[2025년 집행 부진 사업 현황]

(단위: 백만원, %)

세부사업	내역사업	2025년 결산					집행부진 사유
		예산액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	
이태원참사 진상규명	이태원참사 진상규명	1,161	1,161	319	27.5		○'25.6월 이태원참사 조사개시 결 정 이후 관련 예산이 실집행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
안전사회구현	안전사회구현	286	286	197	69.1		○(국내여비) 직권조사 시기(25.6) 및 대부분 수도권 내 출장 등으 로 일부 불용(42백만원 중 29백 만원 불용) ○(일반연구비)낙찰차액(24백만원) 및 용역기간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(34.5백만원)
기록관리	기록물 조사 및 수집	171	171	31	18.1		○기록관리 전문 별정직 채용 지연 에 따라 참사 자료기록 수집·분 석 및 정리 일용직 채용(12개월 →3개월)이 순연되어 일용임금 미집행
	기록물 정리 및 DB화	9	9	1	11.1		○실제 수집되는 자료기록은 대부 분 디지털 형태이며, 종이기록 수량이 미미하기에 관련 DB장비 의 임차 또는 구매 비용 미집행
	기록물 선별·이관 및 보존	59	59	26	44.0		○실제 수집되는 자료기록은 대부 분 디지털 형태이며, 종이기록 수량이 미미하기에 관련 보존용 품 구매 비용 미집행
인건비	인건비	4,183	4,183	2,723	65.1		○채용일정 지연
기관운영(총액)	기관운영(총액)	1,240	1,240	716	57.7		○기간제 근로자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 지연에 따라 집행률 저조

(자료 : 특별조사위원회)

□ 2025년 1월 예비비 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다수 사업에서 집행률이
부진한 배경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6월 특별조사위원
회의 첫 조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, 대부분 조사 활동에
필요한 예산의 집행이 그 시점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
설명함.

□ 그러나, 기획재정부(現 기획예산처)의 「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, 2025년 예비비 신청 시 위 사업들의 실제 소요에 대한 추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.

□ 특별조사위원회의 2026년 본예산 현황을 보면 2025년 12개월치로 편성한 예비비보다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는데,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정 조사활동 기한은 2026년 9월까지이고,

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 간 존속하게 되므로¹⁾,

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과 활동 종료 후 수행하는 잔존사무를 구분하여 집행 계획 및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.

1)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49조(사무처의 존속기간)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.

[2025년 집행 부진 사업의 2026년(5월 말) 집행 현황]

(단위: 백만원, %)

세부사업	내역사업	2025년 결산				2026. 5월 말 기준 집행 현황			
		예산액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예산액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
이태원참사 진상규명	이태원참사 진상규명	1,161	1,161	319	27.5	1,853	1,930	478	24.8
안전사회구현	안전사회구현	286	286	197	69.1	293	328	187	57.0
기록관리	기록물 조사 및 수집	171	171	31	18.1	40	40	29	72.5
	기록물 정리 및 DB화	9	9	1	11.1	174	174	5	2.9
	기록물 선별이관 및 보존	59	59	26	44.0	35	35	1	2.9
인건비	인건비	4,183	4,183	2,723	65.1	4,707	4,707	1,877	39.8
기관운영(총액)	기관운영(총액)	1,240	1,240	716	57.7	1,421	1,421	563	39.6

(자료 : 특별조사위원회)

□ 따라서,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의 집행 부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 및 사무처의 잔존 사무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²⁾.

2)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업별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법정 활동기간 내 적기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임.

2. 이태원참사 진상규명(1131-310) 및 안전사회 구현(1131-320)

가. 개요

- ‘이태원참사 진상규명’ 사업은 10·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국내·외 현장조사, 청문회 및 간담회 실시, 피해자·증인·참고인 면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, 2025년 예산현액 11억 6,100만원 중 3억 1,900만원을 집행하고, 7,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, 7억 6,500만원을 불용하였음.
- ‘안전사회 구현’ 사업은 10·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·수습과정·후속 조치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, 2025년 예산현액 2억 8,600만원 중 1억 9,700만원을 집행하고, 3,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, 5,400만원을 불용하였음.

[2025회계연도 사업 집행 현황]

(단위: 백만원)

세 부 사 업 명	2025년									2026년
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예비비	이.전용 등	예산 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	예산액
	본예산	추경								
이태원참사 진상규명	-	-	-	1,161	-	1,161	319	77	765	1,853
국내조사	-	-	-	741	-	741	181	-	559	883
국외조사	-	-	-	150	-	150	72	-	78	250
연구용역	-	-	-	200	-	200	66	77	57	200
종합보고서 발간	-	-	-	70	-	70	-	-	70	520
안전사회 구현	-	-	-	286	-	286	197	35	54	293
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	-	-	-	78	-	78	67	-	11	162
피해자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	-	-	-	208	-	208	130	35	43	131

나. 예비비 이월 사용에 대한 주의 및 연구용역사업의 집행
가능성 확보 필요

- 2025년 특별조사위원회는 세부사업 ‘이태원참사 진상규명’과 ‘안전
사회 구현’에 각각 일반연구비(260-01)를 편성하여 총 10건의 연구
용역을 발주하였음.

[2025년 특별조사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현황]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용역명	용역기간	용역비	수행기관
이태원참사 진상규명	10.29이태원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공간밀집 시뮬레이션	'25.09.26 ~ '25.11.21	20	국립금오공과대학 산학협력단
	10.29 이태원역에 대한 공간밀집 시뮬레이션	'25.12.24 ~ '26.02.23	20	국립금오공과대학 산학협력단
	10.29이태원참사 발생 현장에 대한 소음·진동 시뮬레이션	'25.10.01 ~ '25.11.28	15	한양대산학협력단
	10.29이태원참사 관련 공적 발언과 사회적 영향 분석	'25.12.01 ~ '26.03.30.	40	주식회사 아르스프락시아
	10.29이태원참사희생자 사망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연구용역	'25.12.29. ~ '26.05.31.	20	재단법인 응급의학연구재단
	10.29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연구용역	'25.12.26. ~ '26.05.20.	20	부산대 산학협력단
안전사회 구현	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 재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	'25.11.14~ '26.2.13	20	한국갈등학회
	국내외 다중운집 인파사고 사례조사 연구용역	'25.9.23~ '25.12.23	22	고려대 산학협력단
	다중운집인파관리 관련 해외 선진 법 제도의 국내 적용 방안 연구용역	'25.11.14~ '26.2.13	22	한국행정학회
	이태원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 권리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	'25.12.2~ '26.4.30	115.5	문화사회연구소

(자료 : 특별조사위원회)

- 그런데, 총 10건의 연구용역 과제 중 2025년 연내 과제가 완료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, 다른 7건의 과제는 모두 2026년까지 용역기간이 이어졌는데, 해당 7건의 연구용역은 모두 회계연도 말인 11, 12월부터 연구용역이 개시되는 것으로 용역기간을 설정하였음.
- 이에 따라, 위 세부사업들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비목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, 예비비는 지출 후 국회의 사후 승인을 거치는 성격의 예산이므로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「국가재정법」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³⁾ 등 법률에 규정된 예산 집행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, 이러한 측면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방식으로 보임.
- 아울러 기획재정부(現 기획예산처)의 「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」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[2025년 각 세부사업별 일반연구비(260-01) 집행 현황]

(단위: 백만원, %)

세부사업명	2025년 결산						2026. 5월 말 기준 집행 현황			
	예산액	예산현액(A)	집행액(B)	이월액	불용액	집행률(B/A)	예산액	예산현액(A)	집행액(B)	집행률(B/A)
이태원참사 진상규명	200	200	66	77	57	32.9	200	277	64	23.1
안전사회구현	200	200	141	35	24	70.5	125	160	31	19.4

(자료 : 특별조사위원회)

3) 「국가재정법」 제3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- 특별조사위원회는 2026년에도 각 세부사업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, 2026년 9월 동 위원회의 법정 조사활동 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연구용역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 가능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,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예비비 이월 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2026년에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집행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⁴⁾.

4)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이루어진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 이후 진상규명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2025년 하반기에 수립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등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면서, 향후 법정 조사활동 기한 내 진상규명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.